‘가족 돌봄·고립’ 아동·청년 맞춤형 지원 길 열렸다

[복지사각지대, 법이 품는다]

(상)‘위기아동청년법’ 제정 배경·의의

작년 발의·올해 3월 공포…내년 3월 시행

34세 이하 대상 학업·취업·주거 지원 등

광주사회서비스원 대상자 발굴 표본조사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진로를 포기해야 했던 ‘가족 돌봄 대상자’와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법이 지난 3월 제정됐고 다음해 3월26일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 갖는 의미와 효과를 짚어보고 광주 지역 지자체와 사회복지단체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3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 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 참여를 보장해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위기아동청년법의 제1조이다.

제2조(정의)에선 이 법의 수혜 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34세 이하의 ‘위기아동·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관련 법에 의해 지원을 받아왔으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려움을 그저 스스로 감내해야만 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년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7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후 유사 법안들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올해 3월25일 공포됐다.

해당 법에선 국가에게 개인별 사례 관리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원 범위에는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주거 지원, 특별 지원 등이 포함되며 사례 종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이른 나이에 생계를 책임져 온 청소년과 청년들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저소득 중심’의 기존 복지제도 안에선 금전 외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행에 앞서 전국 지자체들은 대상자 발굴과 실태 파악을 위한 표본 조사를 진행 중인데, 광주 지역의 경우 현재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표본 조사는 오는 11월께 마무리 될 예정이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로 선별한 인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정량 설문과 병행되는 조사 항목에는 가족 구성과 돌봄 시간, 정서 상태, 학업·진로 영향, 경제적 부담,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등이 포함된다.

주요 문항은 ▲하루 평균 돌봄 시간 ▲돌봄 대상의 질환 또는 장애 유형 ▲돌봄으로 인한 학업·진로 변화 ▲정서적 변화(우울·스트레스 등)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등이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5개 자치구는 선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웹 설문도 병행할 계획이며 1차 선별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 추가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포괄적 복지사업 안에서 제한적인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체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조사는 향후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0일 광주 서구 서석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열사병 사망 80대女 ‘온열질환자 미분류’ 왜?

응급실 진료·사체 검안만 집계

실제 환자 더 많을 것으로 추정

폭염 경보 속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온열질환자로 분류되지 않아 의아함을 남기고 있다.

10일 곡성소방서와 곡성군 보건의료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7분께 곡성군 겸면 소재 농경지에서 A(80대·여)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의식 불명 상태의 A씨를 확인, 현장에서 의료 지도를 받은 후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의료진은 A씨가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렸다. 전날 곡성의 낮 최고기온은 36.2도까지 올라갔다. 다만, 질병관리청의 체계에 A씨는 온열질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는 응급실 진료를 거치거나 사체 검안을 통해 확인된 이들만 집계하고 있다”며 “A씨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현재 집계 시스템보다 실제 온열질환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까지 지역 내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광주 22명, 전남 87명 등 총 109명으로 집계됐다. /안재영 기자

장성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집단 탈주’

14명…지난달 중순께도 2명 이탈

계절 근로를 위해 태국에서 장성으로 온 근로자 십수명이 집단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장성군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태국인 계절근로자 14명(남자 10명·여자 4명)이 지난 2일 숙소를 이탈했다.

계절근로자 비자(E-8)를 받아 5월2일 입국한 이들은 장성 지역 근로지 7곳에서 일해오다 두 달여 만에 달아났다. 현재까지 14명 모두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성에선 지난달 중순께도 태국인 계절근로자 2명이 근무지를 나가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들은 최근에 숙소를 이탈한 태국인들과 같은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국내 다른 지역에 가족이 거주 중이라 그곳으로 향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장성군은 우선 도주한 2명에 대해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8을 받아 들어온 외국인이 정해진 근로지를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근로주를 대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태국 대사관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정 청취를 하는 중이고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 후 다시 근로주에게 보낼 지, 아니면 추방 절차를 밟을 진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재영·장성=김문태 기자

“뺑소니 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적법”

광주고법, 1심 기각 유지 판결

사고 후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고법판사)는 A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구호나 신고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와 관련,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1심에서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도주한 게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 유지에 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취소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사정을 고려해도 현장을 임의로 이탈한 행동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기각 판결했다. /안재영 기자